

#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 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 :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

“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## 나. 주요 사업

### ○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

- 시정 및 구정 통합상담서비스
- 상담인력 역량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양성
- 전문상담에 최적화된 DB시스템 구축
- 생산적인 노사 관계 모델구축
- 정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시민중심 상담서비스 개발
-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상담정보시스템 구축
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다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
-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
-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단순상담에서 전문상담 또는 특화상담 수요 증가
-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봉사담당관 민원기획팀 최현국 (☎2133-6465)